

평창군수도사업설치조례안 심사 보고서

1. 심사 경과

- 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2001. 8. 17 평창군수(도시경제과장)
나. 회부 일자 : 2001.10. 12
다. 상정 일자 : 2001.10. 13 제89회 평창군의회(임시회) 제1차 조특
상정 · 의결

2. 제안설명의 요지

(도시경제과장 석명준)

가. 제안이유

- 상수도 사업에 대하여 기업회계 원리가 적용되는 지방공기업으로 전환하여 사업의 생산성을 제고하려는 정부방침에 의거 상수도 공기업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함.

나. 주요골자

- 수도사업 설치(안 제1조)
- 사업범위(안 제2조)
- 관리자 지정(안 제4조)
- 조직 · 인사(안제5조 · 제6조)
- 출자(안제12조)
- 재정지원(안 제13조)
- 계리 상황의 보고(안 제19조)
- 업무상황 설명서의 제출과 공표(안 제20조)

3. 전문위원 겸토보고의 요지

(전문위원 박태영)

- 본 조례는 제정조례로써 먼저 조례제정의 근거가 되는 상위법령을 살펴 보면,

○ 지방공기업법

제1조(목적) : 이 법은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치·경영하거나 법인을 설립하여 경영하는 기업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그 경영을 합리화 함으로써 지방자치의 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

제2조(적용범위) : 이 법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 중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치·경영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이상의 사업

· ① 수도사업

제5조(지방직영 기업의 설치)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직영 기업을 설치·경영의 기본사항을 조례로 정하여야 한다.

시행령

제2조(지방직영 기업의 범위) ① 지방공기업법 제2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이상의 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호 사업을 말한다.

· 수도사업 : 1일 생산능력 1만 5천톤이상

- 본 조례는 상수도 사업에 대하여 기업회계 원리가 적용되는 지방공기업으로 전환하여 사업의 생산성을 제고하고 또한 정부의 방침을 반영하는 것임.

- 수도사업의 설치·범위·관리자지정·조직·인사·특별회계설치·일반 회계 부담·출자·재정지원·지방채발행·잉여금처분·계리상황보고·중요자산 취득처분등의 모든 조례 내용은

지방공기업법의 규정범위에 부합하며 행정자치부의 표준안을 참고하여 제정한 조례로써 특별한 문제점이 발견되지 않았습니다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없음

질의요지	답변요지
<input type="radio"/> 상수도 사업에 대한 적자 해결방안은?	<input type="radio"/> 상수도 사용료를 인상하는 것 뿐이 없음.
<input type="radio"/> 15,000톤 이상으로 규정되어 있는 데 이하는 없는지?	<input type="radio"/> 15,000톤 이상 읍면은 없으며 자치단체별 합산규모임.
<input type="radio"/> 예산의 탄력규정은 무엇을 얘기하는지?	<input type="radio"/> 일정사업을 위한 수입금을 지출할 때 사용하기 위한 것임.

5. 토론요지 : 없음

6. 심사결과 : 원안의결

7. 소수의견의 요지 : 없음

8. 기타 필요한 사항 : 없음

붙임 : 평창군수도사업설치조례안 1부